

# 知的所有權保護를 위한

## 國際機構 및 條約의 紙上探訪

- …… 知的所有權 保護를 위한 國際機構 및 條約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가장 基
- ……礎的인 質問같지만 선뜻 體系的 對答을 하기란 쉽지 않다. 이는 그동안 우리가 이
- ……들 機構 및 條約과 接觸 機會가 적었기 때문이다. ....
- …… 그러나 知的所有權의 國際化時代를 살아가는 우리는 이제 이들 機構 및 條約을
- ……모르고는 知的所有權의 保護를 期待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本誌는 紙上探訪을 마
- ……련, 이들 機構 및 條約을 紹介하기로 했다. ....<金 亨 昊 記>.....

◎ 第 7 回 ◎

### 이달의 目次

- 標章의 國際登錄에 관한 마드리드協定
- 原產地 各稱 및 그 國際登錄의 保護를 위한 리스본 協定

<다음號에 繼續>

### ■ 標章의 國際登錄에 관한 마드리드 協定

#### ▲ 正式名稱

Madrid Agreement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of Marks of April 14, 1891, revised at Brussels in 1900, at Washington in 1911, at The Hague in 1925, at London in 1934, at Nice in 1957, and at Stockholm in 1967, and amended in 1979.

#### ▲ 加入國 現況

· 파리 協約의 當事國은 어느 國家나 이 協定에 加入할 수 있으며, 加入國이 되기 위해서는 加入書나 비준서를 WIPO事務局長에게 寄託하여야 한다.

· 1986年末 現在 이 協定의 當事國은 알제리, 오스트리아, 벨지움, 불가리아, 체코슬로바키아, 北韓, 이집트, 프랑스, 東獨, 西獨, 헝가리, 이태리, 리히텐스타인, 룩셈부르크, 모나코, 몽고리아, 모로코, 네덜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산마리노, 소련, 스페인, 수

단, 스위스, 튀니지, 베트남 및 유고슬라비아등 28個國이다.

#### ▲ 沿 革

—1981年 4月 14日 「製造標 또는 商標의 國際登錄에 관한 마드리드協定」 締結

—1982年 7月 15日 벨지움, 프랑스, 스페인, 스위스, 튀니지등 5個國에 대해 協定 發効

—1900年 12月 14日 브뤼셀에서 改正

—1911年 6月 2日 워싱턴에서 改正

—1925年 11月 6日 헤이그에서 改正

—1934年 6月 2日 런던에서 改正

—1957年 6月 15日 니스에서 改正

—1967年 7月 14日 스톡홀름에서 改正, 「標章의 國際登錄에 관한 마드리드協定」으로 改稱

—1979年 修正

—1985年 8月 1日 現 當事國中 마지막 28번째로 불가리아에 대해 協定 發効

※ 1986年末 現在 이 協定의 當事國인 28個國中 포르투갈, 산마리노, 튀니지등 3個國은 本 協定의 니스改正 條例를 채택하고 있으며 그 나머지 25個國은 모두 스톡홀름 改正條例를 채택하고 있다.

#### ▲ 主要 內容

本 協定은 WIPO國際事務局에 대해 행하는 標章(商標 및 서비스標)의 登錄을 위해 規定하고 있다.

本 協定에 基礎하여 이루어진 登錄은 締約國인 몇개의 國家에서 効力を 갖게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意

味에서 國際的이라 할 수 있다.

이 協定の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當該 出願인이 締約國中 一國의 國民이거나 그 나라에 거주하거나 또는 實質的이며 效果的인 工業 또는 商業的 施設을 갖고 있어야 한다. 또한 當該 締約國의 國內商標官廳에 그의 標章을 먼저 登錄하여야 한다. 이러한 준비가 완료되면 當該 國內官廳을 통하여 國際登錄을 위해 出願할 수 있다.

當該 標章이 國際登錄되면 지체없이 國際事務局에 의해 公表되며 出願인이 保護를 받고자한 各 締約國에 通報된다. 이러한 通報를 받은 國家들은 1年以內에 自國의 領域內에서는 當該標章이 保護받을 수 없다는 것을 그러한 결정의 理由를 들어 선언할 수 있다.

이러한 선언이 있게되면 그 後의 節次는 拒絶을 한 國家의 官廳 또는 法院에서 계속된다.

1年期間이 경과하도록 그러한 宣言이 없었다면 當該 標章의 國際登錄은 國內登錄과 同等한 効力을 갖게 된다.

國際登錄은 當該 標章의 所有者를 위해 몇가지 유리한 점을 갖고 있다. 즉, 保護를 받고자 하는 締約國의 國內官廳에 자기 다른 言語로 별도의 手數料을 지불하며 나누어서 出願하는 대신에 本國에서 當該 標章을 登錄한 後에 하나의 言語(佛語)를 使用하여 하나의 官廳(國際事務局)에 手數料을 지불하여 단 한번의 出願만 하면 된다. 또한 當該 登錄을 更新(20年마다)할 경우에도 이와 類似한 혜택이 부여된다.

國際登錄은 業務量을 감소시키는 등 國內商標官廳들에게도 유리하다.

예를 들면, 國內商標官廳은 이들 標章들을 公表할 必要가 없다는 것 등이다.

### ▲標章의 國際登錄 現況

1893년에 最初의 國際標章이 登錄된 이래 1986年 3月 21日 500000번째 “國際標章”이 標章의 國際登錄原簿에 登載되었다.

1985年 한 해동안 國際事務局에는 마드리드 協定에 근거하여 13,696件的 登錄 및 更新이 있었다.

1986年 4月 現在 効力을 가지고 있는 標章의 國際登錄件數는 대략 280,000건에 달하고 있다.

## ■ 原產地名稱 및 그 國際登錄의 保護를 위한 리스본 協定

### ▲正式名稱

Lisbon Agreement for the Protection of Appellat-

ions of Origin and their International Registration of October 13, 1958, revised at Stockholm(1967), and amended in 1979.

### ▲加入國 現況

· 파리條約의 當事國은 어느 國家나 이 協定에 加入할 수 있으며, 加入國이 되기 위해서는 加入書나 비준서를 WIPO 事務局長에게 寄託하여야 한다.

· 1986年末 現在 이 協定의 當事國은 알제리, 불가리아, 버키나왓소, 콩고, 쿠바, 체코슬로바키아, 프랑스, 가봉, 아이티, 헝가리, 이스라엘, 이태리, 멕시코, 포르투갈, 토고 및 튀니지등 16個國이다.

### ▲沿革

產品의 原產地表示 또는 原產地名稱의 保護에 관하여 파리協約은 이들을 保護의 對象으로 함(條約 1條(2))과 아울러 具體的인 取締規定(條約10條)을 設定하고 있으나 파리協約 10條의 規定을 不充分 하다고 보고 보다 嚴重한 規制를 求하는 同盟國間에 「商品出處의 虛偽表示禁止를 위한 1891年 4月 14日의 마드리드 協定」이 締結되었다.

그러나 마드리드 協定의 主目的은 虛偽表示의 防止에 있으며 原產地名稱의 保護가 完全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리하여 몇몇 國家間에 前述한 마드리드 協定에서 進一步하여 어느 名稱을 原產地名稱으로 一但 認定하게 되면 永久히 이것을 保護하고자 하는 目的下에 1958年 10月 31日 리스본協定을 締結하기에 이르렀다.

### ▲主要 內容

이 協定은 原產地名稱을 國際事務局에 國際登錄함으로써 그 名稱은 國際的保護下에 두려고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리스본協定의 當事國은 파리協約의 테두리 안에서 特別同盟을 形成함과 아울러 이 特別同盟에 속하는 他國 產品의 原產地名稱으로 그 原產國에서 原產地名稱이라고 하여 保護되고 있으며 그 위에 國際事務局에 登錄된 것은 이 協定의 規定에 따라 保護할 것을 明記하였다. (協定 1條)

여기서 말하는 「原產地名稱」(appellation of origin)이란 一定한 地理的 場所에 由來하는 產品의 財產權의 性格을 갖는 概念, 즉 產品의 原產地를 表示하는데 使用되는 國家, 地方等의 地理的 名稱(the geographical name) 및 自然的, 人爲的 要素를 包含한 地理的 環境(the geographical environment)에 排他的 또는 本質的

으로 基因하는 品質(quality) 및 特質(characteristics)을 말한다. (協定 2條(1))

또한 「原產國」(the country of origin)이란 原產地名稱과 같은 地名을 갖고 그위에 그名稱에 그名聲을 갖는 地方 또는 地域이 그 國內에 있는 國家를 말한다. (協定 2條(2))

原產地名稱은 다만 產品의 眞實한 出所가 表示되는 경우를 禁止하는데 지나지 않고 그名稱이 「特性」(kind) 形(type) 樣式(make) 模倣(imitation)其他의 表現을 隨伴하는 경우일지라도 모든 侵害, 模倣으로부터 保護하게 된다. (協定 3條)

大概 이들을 放置하게 되면 地理의名稱에 通俗의 性質을 부여하게됨에 따라 (地理의名稱의 普通名稱化), 窮極에는 需要者를 欺瞞하게되는 事態를 招來하게될 것이기 때문이다.

原產地名稱의 登錄은 國內法의 規定에 따라 當該名稱을 使用할 權利를 갖는 公共團體 또는 個人이나 法人의 名義로서 特別同盟에 屬하는 國家들의 行政官廳의 請求에 의해 所定의 申請書를 國際事務局에 提出함

으로써 이루어지게 된다. (協定 5條(1))

原產地名稱의 登錄申請에 대하여 登錄簿에 등록하게 되면 國際事務局은 遲滯없이 特別同盟에 屬하는 國家들의 行政官廳에 通報함과 아울러 定期刊行物에 公表한다. (協定 5條(2))

通報를 받은 國家의 行政官廳에서는 一定한 경우에 當該名稱에 關係 保護를 하지않는다는 要旨의 宣言을 할 權利가 留保되고 있다.

이 경우 通報를 받은 날로부터 1年以內에 理由를 나타내어 拒否의 通報를 할수가 있으므로 正當한 理由가 있으면 이에따라 國際登錄에 의해서 생기는 義務를 免할수 있게되고 正當한 理由가 없어 當該義務를 免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도 通報前에 사용된 名稱의 使用禁止에 對해서 2年의 猶豫期間이 주어지고 있다. (協定 5條 (3)~(6))

또한 原產地名稱의 國際登錄은 他同盟國의 通報에 의해서 當該名稱이 本國(country of origin)에서 保護를 喪失하지 않는 限 他의 同盟國에서의 保護는 계속된다. (協定 7條) <계속>

## 韓國發明特許協會 新刊 案內

### 發明成功事例集

### 發明으로 成功한 사람들

- 第1部 : 發明으로 成功한 사람들(10件)
- 第2部 : 發明으로 앞서가는 中小企業(10件)
- 第3部 : 紙上 發明教室(10件)
- 第4部 : 紙上 發明獎勵館(10件)
- 第5部 : 尖端發明의 産室(20件)
- 附 錄 : 누구나 發明人이 될 수 있다

(發明의 發想技法 중심)

<가격 3,000원>

국판 242面

미색모조(내지)

250아트(표지)

※ 자세한 것은 本會 調查部 (557-1077~8)나 資料販賣센터(558-8263)로 問議바람

## 發明은 富의 源泉 國力의 바탕!